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독도·동해 표기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외교원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교수·부교수·조교수)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사관 승격 및 주시드니총영사관브리즈번출장소 신설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 외무공무원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3등급 또는 4등급 11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인력 8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출입국 등 5개 업무분야의 주재관 인력 6명(4급 2명, 5급 2명, 경정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3호 중 “복무·근무시간·당직·출장”을 “복무·근무시간·당직근무명령·출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당직업무 관리

제24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정책공공외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 업무 총괄·조정
2.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3.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4. 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5. 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
6. 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7. 국민외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민외교센터 운영 등 국민외교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⑧ 정책공공외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공공외교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총괄·조정
2.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3.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4.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5. 디지털 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6. 디지털 공공외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별표 1 중 총계 “958”을 “96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54”를 “957”로 하며, 일반직 계 “236”을 “237”로 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6”을 “7”로 하며, 외무공무원 계 “710”을 “712”로 하고,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19”를 “20”으로 하며,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운전주사 “13”을 “1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65”를 “96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61”을 “964”로 하며, 일반직 계 “237”을 “238”로 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7”을 “8”로 하며, 외무공무원 계 “716”을 “718”로 하고,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19”를 “20”으로 하며,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운전주사 “13”을 “14”로 한다.

별표 2 중 총 계 “106”을 “109”로 하고, 전임교수요원 계 및 교수·부교

수 또는 조교수 “21”을 각각 “24”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07”을 “110”으로 하고, 전임교수요원 계 및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21”을 각각 “2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412”를 각각 “1,432”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221”을 “222”로 하며,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72”를 “273”으로 하고,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8”을 “19”로 하며,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37”을 “245”로 하고,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26”을 “35”로 한다.

별표 5 제2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교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4)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8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⑧ (생략)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⑨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의 <u>복무 · 근무시간 · 당직 · 출장</u> 및 <u>직장훈련</u> 등에 관한 사무	3. ----- <u>복무 · 근무시간 · 당직근무명령 · 출장</u> ----- -----
4. ~ 12. (생략)	4. ~ 12. (현행과 같음)
⑩ ~ ⑮ (생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재외동포영사실) ① ~ ⑪ (생략)	제20조의2(재외동포영사실)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해외안전지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u>당직업무 관리</u>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 ⑥ (생략)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정책공공외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정책공공외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 콘텐츠 발</u>	1. <u>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 업무 총괄</u>

<u>굴 및 관련 업무 총괄·조정</u> <u>2. 디지털 공공외교 이행 및 관련 업무 총괄·조정</u> 3. <u>삭 제</u> 4. <u>삭 제</u> <u>5. 미주·유럽·러시아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u> <u>6. 미주·유럽·러시아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u> <u>7. 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u> <u>8. 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u> <u>9. 국민외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10. 국민외교센터 운영 등 국민외교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u> <u>⑧ 정책공공외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정책공공외교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총괄·조정</u> <u>2. 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u>	<u>· 조정</u> <u>2.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u> <u>3.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u> <u>4. 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u> <u>5. 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u> <u>6. 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u> <u>7. 국민외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8. 국민외교센터 운영 등 국민외교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u> <u>⑧ 정책공공외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디지털 공공외교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총괄·조정</u> <u>2.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u> <u>3.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이행</u>
--	---

<u>2의2. 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전문가와의 협력</u> <u>2의3. 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지원</u> <u>3.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u> <u>4.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u>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u>및 조정</u> <u>4.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u> <u>5. 디지털 공공외교 관련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u> <u>6. 디지털 공공외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958</u>	<u>961</u>	+3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954</u>	<u>957</u>	+3
·	·	·	
·	·	·	
일반직 계	<u>236</u>	<u>237</u>	+1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u>6</u>	<u>7</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10</u>	<u>712</u>	+2
·	·	·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 · 행정사무관 · ·	<u>19</u> · ·	<u>20</u> · ·	+1
3 등 급 · 4 등 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 ·	<u>13</u> · ·	<u>14</u> · ·	+1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65	968	+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61	964	+3
일반직 계	237	238	+1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7	8	+1
외무공무원 계	716	718	+2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 · 행정사무관 · ·	<u>19</u> · ·	<u>20</u> · ·	+1
3 등 급 · 4 등 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 ·	<u>13</u> · ·	<u>14</u> · ·	+1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6</u>	• <u>109</u>	+3
•	•	•	
•	•	•	
전임교수요원 계	<u>21</u>	<u>24</u>	+3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u>21</u>	<u>24</u>	+3

[별표 2의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07</u>	• <u>110</u>	+3
•	•	•	
•	•	•	
전임교수요원 계	<u>21</u>	<u>24</u>	+3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u>21</u>	<u>24</u>	+3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12	1,432	+20
외무공무원 계	1,412	1,432	+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221	222	+1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72	273	+1
5등급 · 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8	19	+1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37	245	+8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26	35	+9